안양시청 구내식당·매점 운영 규정

제정 2011. 6. 7 훈령 제563호 일부개정 2013. 1. 16 훈령 제592호 일부개정 2016. 10. 20 훈령 제659호(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) 일부개정 2017. 6. 15 훈령 제670호(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청 구내식당·매점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운영주체) 안양시청 구내식당·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청 구내식당·매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3조(운영원칙) 구내식당·매점의 운영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전문운영업체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4조(운영자금) 구내식당·매점의 운영자금은 식비 및 물품판매 자금과 그 밖 의 자금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회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상임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구내식당·매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상임위원은 구내식당·매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, 위원은 시청 실·국·소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. 다만, 구성원 중 어느 한쪽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국·소 내에서 위원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13. 1. 16, 개정 2017. 6. 15>
 - ③ 감사는 감사관이 되고, 간사는 구내식당·매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, 서기는 구내식당·매점업무 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17. 6. 15>
- 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다.
 -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 - ④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내식당 · 매점운영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

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수익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이익금 및 결손금 처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구내식당·매점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본 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안양시장의 재가를 받을 수 있다.
- 제9조(조직) ① 구내식당·매점업무의 집행은 위원장, 상임위원, 간사, 소속직원이 행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구내식당 · 매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할한다.
 - ③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내식당·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
 - ④ 구내식당·매점 직원의 정원 및 복무는 「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0. 20>
- 제10조(권한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범위에서 구내식당·매점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한다.
 -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의 일부를 상임위원 및 간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회계원칙) ① 구내식당·매점 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.
 -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제12조(예산·회계) ①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② 회계처리는 독립채산제로 한다.
- 제13조(금고) 구내식당 · 매점의 금고는 시 금고로 한다.
- 제14조(금전의 보관)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 금고의 입금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소액의 현금을 별도 보관시킬 수 있다.
- 제15조(물품관리) 구내식당·매점 물품관리는 「안양시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
- 제16조(결산) ① 결산은 월말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한다.
 - ② 월말결산은 수입과 지출사항을 결산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연말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17조(결산서류) 연말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손익계산서
 - 2. 대차대조표
 - 3. 잔액시산표
 - 4. 이익잉여금 내역서
 - 5. 정산표
- 제18조(이익잉여금) 제16조의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 - 1.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
 - 2. 이용자 이익환원에 필요한 사업
 - 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
- 제19조(문서관리) 문서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사무관리 규정」을 준용한다.
- 제20조(사무인계인수) ① 사무인계인수는 위원장, 상임위원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변경된 날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는 「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」을 준용하되,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.

안양시청 구내식당 · 매점 운영 규정

제2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훈령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양시공무원연금매점설치운 영규정」,「안양시공무원연금매점운영위원회위임전결규정」 및 「안양시청구내 식당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칙 <2013. 1. 16 훈령 제592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0. 20 훈령 제659호,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안양시청 구내식당·매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 중 "「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」"을 "「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」"으로 한다.

⑥ 생략

부칙 <2017. 6. 15 훈령 제670호,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안양시청 구내식당·매점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국·소"를 "실·국·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감사실 장"을 "감사관"으로 한다.

⑨ 부터 ⑩ 까지 생략